

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

1. Exporter			Reference No. : KOREA -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		
2. Importer					
3. Departure Date:			4. Vessel's Name/Flight No.:		
5. Port of Discharge and Route:					
6. Country of Final Destination:			7. Country of Origin:		
8. Item Number	9. Description of Goods	10. HS No.	11. Marks & Numbers	12. Quantity & Unit	13. Origin Criterion
14. Declaration by the exporter			15. Certification		
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;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(Country)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-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 (Importing Country) Place and Date :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			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Korea,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-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lace and Date: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		

작 성 요 령

※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.

1. Exporter(수출자) : 수출자의 성명, 주소, 수출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2. Importer(수입자) : 수입자의 성명, 주소 및 수입국을 적습니다.
3. Departure Date(출항일) :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출항일을 적습니다.
4. Vessel's Name/Flight No.(선명/편명) : 선박명이나 항공기의 편명을 적습니다.
5. Port of Discharge and Route(하역항 및 운송경로) : 물품을 하선하거나 하기하는 최종 항만이나 공항을 적습니다. 물품이 운송도중 제3국에서 환적되는 경우에는 본 란 또는 별지에 환적국가와 환적장소 등 모든 운송경로를 적습니다.
6. Country of Final Destination(최종 목적국) : 물품의 최종 목적국이 싱가포르인 때에는 "REPUBLIC OF SINGAPORE" 로 적습니다.
7. Country of Origin(원산지) : 물품의 원산지는 "REPUBLIC OF KOREA" 로 적습니다.
8. Item Number(물품번호) :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.
9. Description of Goods(품명) : 송품장에 기재된 품명과 동일하게 적습니다.
10. HS No.(품목번호) : 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.
11. Marks & Numbers(표시 및 일련번호) : 물품의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.
12. Quantity & Unit(수량 및 단위) : 물품의 수량 및 측정단위(pieces, Kg 등)를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13. Origin Criterion(원산지결정 기준) :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하여 적용된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영문으로 표시합니다.
 - 가.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: "WO"(Wholly Obtained Rule)
 - 나.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 : "CTC"(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)
 - 다.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: "VAC"(Value Added Criterion)
 - 라.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: "CTC & VAC"
 - 마. 역외가공 적용품목 : "OP"(Outward Process)
 - 바. 개성공단 적용품목 : "Gaesung Products"
 - 사. 최소기준 적용품목 : "De Minimis"
 - 아. 그 밖의 기준 적용품목 : "Others"

※ 제8란부터 제13란까지의 기재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에 적습니다.
14. Declaration by exporter(수출자 신고) :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신청일자, 장소, 수출국명 및 수입국명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.
15. Certification(증명) 및 Reference No(증명서 발급번호) :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발급장소를 적고, 발급담당자가 서명을 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. 원산지증명서 우측 상단의 Reference No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적습니다.